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등 관련 비위에 대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준용〉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4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등 관련 비위에 대한 국·공립학교 교 원 징계기준 준용	3
2. 개정안 부칙	9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6. 23.
3. 회 부 일 : 2026. 0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사립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과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시험문제 유출, 성적 관련 비위 등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 2021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 출제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험문항을 전면 재출제하였고, 2022년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부산·경기·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원의 시험문항 유출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재시험 실시, 계약해지,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2025년 경북에서는 퇴직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퇴학과 관련자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음. 이처럼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학생의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 할 수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등 관련 비위에 대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준용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또는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6조(징계의결) ① ----- ----- ----- ----- ----- ----- ----- ----- ----- ----- <u>. 다만, 제54조의 3제6항제2호에 따른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6호에 따른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u>

② ~ ⑤ (생략)	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의 유형·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²⁾은 다시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³⁾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⑥ (생략)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⑤ (생략)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3)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면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할 때,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학교별로 달리 이루어져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이 두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비위행위에는 현재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는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같은 별표 제1호 라목) 및 학생 선발 과정 등과 관련한 비위(같은 별표 제1호 바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과면부터 견책까지의 양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5) 개정안 제안이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개정안 관련 사항]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과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과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이에 따라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새로운 징계기준을 도입하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현행 하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양정의 내용과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일부 비위 유형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별도로 준용을 규정할 경우 동일한 징계기준 체계 내에서 규율수준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

현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⁶⁾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 및 학생 선발 관련 비위뿐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⁷⁾ 사립학교 교원의 전반적인 징계기준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하는 체계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 학생성적 관련 비위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별도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징계기준이 일부는 법률에, 나머지는 교육부령에 각각 규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규율수준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

6)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

7)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라목·바목 포함)·제2호·제5호·제7호

- 셋째, 법률에서 부령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계에 비추어 이례적인 입법형식에 해당함.

개정안이 준용하도록 하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법률이 부령의 기준을 준용하는 결과가 됨. 「법령 입안·심사 기준」⁸⁾은 준용 규정 시 유의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는 하위법령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교육부> : 신중검토

- 본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교원의 징계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규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한 징계유형과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와 동일한 규범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라 별도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법 적용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805~806면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적용례는 징계기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192

참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 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 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 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 제·검토 경력을 활 용하여 사교육과 관 련한 영리행위를 하 거나 사교육과 관련 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 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 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조 각 호에 따른 학 교 및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대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사. 신규채용, 특별채 용, 승진, 전직, 전 보 등 인사와 관련 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학교폭 력을 고의적으로 은 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자.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차. 연구비의 부당 수 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카. 소속 기관 내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 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 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 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 법」 제69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파. 부정청탁에 따른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직무수행 하. 부정청탁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너.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책 감봉-견책
비고 제5호의2에 따름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 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 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미성년자 또는 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견책 강등-정직

애인에 대한 성희롱 다. 성매매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마. 성폭력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 공연음란 행위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통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 강등-정직 해임-강등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 해임 파면-해임 감봉 강등-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	---	---	--	---

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하. 학생에 대한 신체 적·정신적·정서 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거.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너.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 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교육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말하며, "모의시험"이란 같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모의시험을 말한다. - 제1호자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 제1호과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하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제1호거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제1호더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차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최종 검색일 2026. 7.